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변론의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 의무화 등 >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633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6
3.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7.
3. 회 부 일 : 2025.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58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 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재판 진행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이에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되, 어느 한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안 제159조제1항), 이렇게 기록·저장된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와 교부 절차 및 교부 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한편(안 제15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도록 하려는 내용(안 제160조의2 신설) 등임.

<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②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

④ 제3항에-----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

⑤ 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의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당사자는 제외한다)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신 설>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청구, 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① -----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를-----

--.

제160조의2(신문 등의 기록) ①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의 조서와의 관계 및 그 폐기 등에 관하여는 제1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u>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u> 적혀 있는 때 ② ~ ⑤ (생략)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u>조서</u>) ① (생략) ② 변론준비기일의 <u>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영업비밀이</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u>조서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u>조서 및 속기·녹음과 관련하여서는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0조의2를</u>-----.
---	--

2. 검토의견

가. 변론의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 의무화 등(안 제159조제1항 등)

현행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하도록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을 녹음 또는 속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속기록과 녹음 물은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조서는 구술변론이나 그 밖의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그 심리의 방식과 내용의 요지를 적은 보고문서를 의미함.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여 민사소송절차의 구술주의와 직접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²⁾, 현행법상 변론방식³⁾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음⁴⁾.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속기·녹음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속기·녹음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와 같은 영상녹화 근거 규정⁵⁾이 부재하여 재판 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1)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2) 현행 민사소송절차는 구술주의(민사소송법 제134조제1항)와 직접주의(제204조)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말에 의한 소송행위는 잊히기 쉽고, 불가피하게 재판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소송절차의 경과나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안정성과 명확성을 갖춘 소송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할 수 있음(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I], 2017, p.1210).

3) 법원의 구성,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여부, 변론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 여부, 변론의 공개 여부, 재판의 선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I], 2017, p.1253).

4) 「민사소송법」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변론의 전부에 대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조서의 일부로 하며,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의 경우에는 법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절차의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고, 소송절차와 조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며, 이를 통해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에 따르면, ① 원칙적으로 변론 중 증인신문절차 및 당사자신문절차를 모두 녹음하도록 하되, ②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부동의, 또는 당사자·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있고⁶⁾, 변론의 속기·녹음의 실시와 고지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⁷⁾.

6)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의2(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중 증인신문절차 또는 당사자신문절차는 법 제15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녹음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녹음이 불가능하고,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7)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속기·녹음의 실시와 고지) ① 재판장이 법 제152조 제1항 단서, 제28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거나, 법 제159조 제1항, 제283조 제2항에 따라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속기·녹음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일을 시작할 때에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제9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당사자신문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고지 내용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속기자가 없거나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속기 또는 녹음이 불가능하고, 속기 또는 녹음

나.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 및 교부 절차
(안 제159조제5항 등)

안 제159조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고 있는데, 제5항 및 제6항 본문에서는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이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안 제159조제6항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의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 당사자 등의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이러한 청구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

속기·녹음·녹화의 경우 그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은 조서로서 소송기록에 포함된다는 점에서(안 제159조제2항), 안 제15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보장하되, 사생활 또는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

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속기장비나 법정녹음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준비절차실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속기·녹음을 명한 후 소송관계인의 불출석 등으로 속기·녹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전까지 작성된 속기록, 녹음물은 조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폐기한다.

는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비밀과 신변의 보호 등을 위해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의 청구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다만,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등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162조 및 제163조⁸⁾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해당 규정 간 체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을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 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1.>

④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다.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준용(안 제283조제2항)

안 제283조제2항은 변론준비기일의 속기·녹음과 관련하여 현행 제159조의 내용은 준용하도록 하면서, 변론 전부에 대한 속기·녹음을 원칙으로 하는 안 제159조제1항 및 이와 관련한 개정안 내용은 준용하지 않고 있음.

즉, 변론준비기일의 속기·녹음에 관하여 안 제159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속기와 녹음을 전부 의무화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하지는 않도록 하였는바, 변론준비기일의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 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의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봄.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속기록 등은 소송기록의 일부에 속하고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열람 등 제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의율이 가능하며, 변론 과정에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영상녹화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061